



## Lubrizol — 거래 표준약관 (아시아)

- 1. 약관의 적용:** 본 거래 표준약관은 Lubrizol, 자회사 및 계열사(이하 “판매업체”라고 한다)와 구매업체 간에 모든 거래에 관한 조건으로 하고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간에 별도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및 국가 법률 과 정부 법규, 본 약관을 기준으로 한다. 본 약관은 견적서, 주문 확인서, 청구서 및 명세서(그리고 판매업체가 발행한 모든 추가서류 및 첨부서류)와 더불어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사이의 개별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성한다. 본 약관의 내용이 견적서, 주문 확인서, 청구서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추가서류나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주문 확인서, 청구서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추가서류나 첨부서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구매업체의 주문서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부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의 청약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 중 청약 내용과 다르거나 이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매업체의 본 계약서 교부는 구매업체의 본 계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승낙으로 인정된다. 구매업체가 본 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체의 행위(대금결제 또는 제품의 사용 등)는 본 계약 및 그 모든 내용의 승낙으로 인정된다.
- 2. 가격, 제세공과금 및 허가:** 모든 가격은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판매업체의 가격은 선적시 유효가격으로 한다. 별도의 면제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제조, 판매 또는 납품과 관련한 본 계약 제품의 판매 · 사용 · 프랜차이즈 · 허가 · 소비 및 기타 제세공과금, 수출입 관세 및 검사비용, 위 제세공과금에 대한 모든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일체 비용은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매업체가 소정의 기한 내에 위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자신의 재량으로 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업체는 지체없이 판매업체에게 위 지불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 3. 결제 조건:** 판매업체의 지속적 신용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결제조건은 판매업체의 주문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체의 주문 확인서에 기재된 통화로 현금결제하여야 한다. 구매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는 제품 선적을 보류할 수 있다: (a) 대금결제 지연; (b) 미결제; (c) 판매업체 요청사항에 따라 결제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판매업체는 단계별로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납품된 화물마다 별도의 청구서를 발행하고 각 청구서 기한의 가격기준에 따라 결제하며, 이 경우 향후 납품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결제되지 못할 경우, 미결제 금액에 대하여 연 18%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더 낮은 이율율 기준으로도 함)에 따라 결제 예정일부터 총 청구금액 및 이자가 모두 결제된 때까지의 이자를 산정한다. 그리고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의 지연대금에 대한 추심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 4. 납품, 소유권 및 멸실 위험:**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는 한, 납품은 판매업체의 생산공장에서 운송업체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FCA)으로 한다. 납품 후, 본 계약 제품의 멸실 또는 파손이나 제품으로 인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구매업체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멸실 위험이 구매업체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제품의 소유권도 구매업체에게 이전된다. “운송인 인도조건”(FCA)이라 함은 국제 상업 회의소(ICC)가 발간한 인코텀스(INCOTERMS) 2000에 기재된 의미 또는 이를 대체하는 국제 상업 회의소의 인코텀스(INCOTERMS)의 정의로, 제품 수출에 있어 구매업체가 수출 허가 등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기는 대략적인 일자로 확인이 필요하다. 만일 구매업체가 선적을 지연할 경우, 대금결제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진행되며, 본 계약 제품의 보관 위험은 구매업체가 부담하고,

구매업체에게 상당한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제품이 판매업체의 유조차량으로 공급될 경우, 구매업체는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a) 제품 수령 후 48시간 내에 화물을 하역할 것; (b) 위와 같이 하역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체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 (c) 1일 기준으로 각 유조차량마다 미화 50달러 상당의 지연 비용을 지급할 것.

5. 보증: 납품과 관련하여 판매업체는 구매업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a) 본 계약 제품은 판매업체의 규격과 일치한다. (b) 판매업체는 본 계약 제품에 대한 적법·유효한 소유권을 가진다. (c) 본 계약 제품에는 판매업체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매업체는 구매업체가 본 계약 제품을 특정하게 사용한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판매업체가 보증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매업체의 구제방법은 판매업체의 재량에 따라 구매업체의 제품 설치장소에서의 하자 있는 제품의 교환 또는 제품 구매 가격의 환불로 제한된다. 판매업체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구매업체는 제품을 반납 할 수 없다. 판매업체는 구매업체의 제품 설치장소에서 제품을 점검할 수 있다. 구매업체가 납품 후 30일 이내에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든 보증 관련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 보증 및 구제방법에도 불구하고, 구매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한 이후 부적절한 보관, 오염, 부적절한 사용 또는 잘못된 취급으로 인하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판매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매업체는 본 계약 제품의 판매 가능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그밖의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구매업체는 오로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판매업체의 의무에 근거하여 제품을 구매할 것임을 인정한다.

6. 책임 제한: 일체의 소송 또는 청구에 있어 판매업체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법적 손해에 대하여 구매업체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계약, 불법행위(법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에서, 단독, 병과 또는 그밖의 과실(적극적 또는 소극적 손해) 및 판매업체의 엄격 책임을 포함), 법 규정에 근거하거나, 판매업체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또는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판매업체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판매업체의 재량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제품 또는 제품의 부품에 대한 구매 가격 또는 이러한 하자 있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교환에 한정된다. 납품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업체의 책임은 시장 가격과 판매업체의 가격 간의 차액으로 한정된다. 판매업체는 일체의 벌칙 조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상 청구에 관하여 구매업체의 판매업체에 대한 소송은 청구 원인 발생 후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7. 특허 관련 배상: 본 계약 제품이 준거법상 유효한 제3자의 기존 특허권을 침해하여 구매업체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매업체는 본 약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구매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구매업체가 위 특허권 침해 청구에 대한 최초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체에게 위 내용을 서면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판매업체는 변호를 위하여 특허권 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소송 참여가 판매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업체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구매업체가 위 소송 변호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구매업체가 어떠한 처리 작업 중 또는 다른 자재와 결합하여 본 계약 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업체에 의한 본 계약 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는 구매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구매업체 또는 기타 제3자의 위와 같은 제품 취급, 사용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판매업체의 책임을 면제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 계약 제품의 잠재적인 특허권 침해 청구에 대한 판매업체의 모든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그밖의 모든 보증을 대체한다. 구매업체가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어떠한 처리 작업 중 본 계약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구매업체는 이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8. 배상: 구매업체의 제품 구매, 소유, 운송, 영수, 조작, 보관, 가공, 변경, 사용, 처분 또는 재판매(별도로 또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어떠한 처리 작업 중)로부터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질병 또는 사망(제3자, 구매업체 직원, 구매업체의 대리인, 계약자, 하도급자, 고객, 그리고 각각의 직원 등 포함) 및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제3자나 구매업체의 손해 또는 손실 등 포함)에 대한 소송, 청구, 책임, 손실, 손해 및 비용(변호사 비용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판매업체는 구매업체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구매업체는 판매업체 및 그 주주, 이사, 임직원, 그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배상하고 이들을 변호하며 이들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9. 불가항력: 판매업체가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판매업체는 본 계약에 규정된 책임을 면한다. 불가항력에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된다: 천재지변, 사고, 화재, 폭발, 홍수 및 허리케인;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쟁의; 폭동; 전쟁(선전 포고와 상관 없음); 연방, 국가, 주, 지방 정부 또는 그밖의 정부(국내 또는 해외) 또는 기타 정부기관(국내 또는 해외)이 현재 또는 앞으로 공포하는 일체의 법률, 규정, 규칙, 조례 또는 행정 처분(이하 “법률”이라 한다)으로, 판매업체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법적 또는 애국적 의무로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김으로써 판매업체의 업무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권, 배급, 할당 또는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령 또는 규칙 등이 포함; 판매업체의 공장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 생산 또는 운송 시설의 부족,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력 부족; 판매업체의 재량에 따라 운송, 동력, 연료, 자재 또는 비축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판매업체 공장의 정상적인 턴어라운드에 기인하거나 판매업체의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가동 중단.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판매업체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판매업체는 구매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일단 통지가 되면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는 한 판매업체의 의무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유예된다.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 사유가 종료할 경우, 즉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구매업체와 판매업체 간 상호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위 지연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판매업체가 기한이 지난 납품 물량을 보충하여야 하거나, 구매업체가 기한이 지난 물량을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 또는 직장 폐쇄에 대한 합의는 전적으로 판매업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업체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합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된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업 또는 직장 폐쇄에 대하여 합의할 필요가 없다. 판매업체는 기한이 된 주문에 응할 경우 합리적인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합리적인

지연”에는 구매업체가 통지를 받은 후 지연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납품일자는 지연 사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떤 이유로든지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판매업체는 자신의 재량으로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판매업체의 부서, 사업부, 자회사 또는 계열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구매업체들 중에, 아니면 판매업체의 생산 라인 중에 공급가능한 제품이나 원자재를 할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불이행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0. 법규 준수: 구매업체는 제품의 구매, 소유, 운송, 영수, 조작, 보관, 가공, 변경, 사용, 처분 또는 재판매(별도로 또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어떠한 처리 작업 중)와 관련하여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매업체는 모든 준거법, 규정 및 규칙(이하 “법률”이라고 한다)과 판매업체 및 계열사, 자회사의 모든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양 당사자는 판매업체에게 적용되는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이하 “FCPA”라 한다)이 다음 사항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한다: 사업 획득 또는 보유에 있어 공무원 자격으로 미국 회사 및 미국 관련 회사를 돕는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미국 이외 정부의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중품을 (1) 지급 또는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 (2) 지급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지급 또는 제공하는 행위. (참조: 다른 미국법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FCPA는 회사가 다른 주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금지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매업체는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FCPA 등을 포함하여 오하이오주법 및 미국법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 (B) 정부 또는 정치단체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표자, 혹은 행정기관의 후보자가 아닐 것; 그리고 (C)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는 행위 및 서비스에 관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귀중품을 제공, 약속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

판매업체, 판매업체가 과반수를 소유하는 계열사 및 각 사업체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이하 “LZ주체”라 한다)가 사업을 관장하는 모든 국내법 및 외국법을 준수하고, 고도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업체의 정책(이하 “본 정책”이라 한다)이 시행 중에 있다. 본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LZ 주체는 협력 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 대표 업체로 하여금 LZ 주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 업체의 행위 또는 업체를 대표하여 진행되는 모든 행위(이하 “본 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매업체는 자신 및 이사,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를 대표하여 본 계약에 따라 위 관계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본 정책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의 웹사이트 [www.lubrizol.com](http://www.lubrizol.com)에 있는 판매업체의 “윤리적 행위 및 법적 행위에 관한 지침(Ethical and Legal Conduct Guidelines)”을 읽고 검토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인정한다.

구매업체가 본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업체는 본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구매업체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업체는 구매업체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책임져야 하는 관행:** 구매업체는, 판매업체가 자재 안전 데이터 시트(이하 “MSDS”라 한다)와 같은 제품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여기에 본 계약 제품에 관한 경고 및 안전·건강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구매업체는: (a) 위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b) 본 계약 제품에 관하여 안전조작, 보관, 운송, 사용, 처리 및 처분 관행을 채택하여 이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준거법상 요구되는 모든 행동 등을 포함하여 구매업체의 제품 사용에 필요한 특별한 주의사항 및 관행 등이 포함된다; (c) 직원, 독립된 계약업체, 대리인 및 고객에게 본 계약 제품의 하역, 조작, 보관, 사용, 운송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 및 안전 사용 관행(판매업체의 최신 MSDS에 포함된 정보 등 포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d) 안전 및 환경 관련 준거법을 준수하고,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매업체가 제11조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판매업체는 15일의 기간을 둔 통지로 제품 선적의 보류 및/또는 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구매업체가 제11조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소송, 청구, 책임, 손실, 손해 및 비용(변호사 비용 등 포함)에 대하여,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판매업체를 변호하고, 판매업체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청구, 요청 및 기타 연락(계약 위반 및/또는 계약 해지 통지 등 포함)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본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수취인의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달하여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영업일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서비스로 전달할 경우, 당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업일이 아닐 경우, 전달 후 다음 영업일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b) 영업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당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업일이 아닐 경우, 전송 후 다음 영업일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송부자가 상대방의 팩스번호로 정확한 페이지 수를 전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송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정확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전송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c) 등기 우편인 경우, 우편물이 보관된 지 5영업일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어떠한 원인으로 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집행이 가능하다. 만일 법원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나, 위 조항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 조항은 위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작성되고 해석되며 집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만일 가격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이 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매업체가 특정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후의 경우 이와 동일하거나 다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판매업체가 특정한 경우 구매업체의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향후의 동일하거나 다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권리 포기 또는 책임 면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되, 판매업체의 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판매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구매업체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적이고, 판매업체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양도, 위임, 법의 적용, 하도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될 수 없고, 이러한 이전 시도는 효력이 없다.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들과 승계자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 본 계약에 따른 판매업체의 권리와 구제방법은 누적적이고, 배타적이지 아니하다. 이미 발생하였거나 본질상 본 계약의 만료, 해지 또는 기타 취소 이후에도 존속하는 판매업체의 권리와 구제방법 및 구매업체의 의무와 책임은 본 계약의 만료, 해지 또는 기타 취소 이후에도 존속하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등을 포함한) 의무와 책임이 이행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계약 당사자 및 승계자와 양수인을 구속한다. 본 계약의 유효성, 해석 및 효과는 판매업체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소송법 및 실체법을 준거로 하며, 법 규정의 선택과 상관 없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분쟁은 최종적으로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싱가포르에서 3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영어로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 상업 회의소의 조정 및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중재 판정에 대한 재판결과는 관할권이 있는 어느 법원에도 제출될 수 있으며, 어느 관할법원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양 당사자들은 이로써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 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재 판정 또는 이에 대한 재판, 그리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구매업체는 이로써 판매업체가 본 약관 중 밑줄 친 조항 및 굵은 글씨체의 조항에 대하여 구매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한다.